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80 발의연월일: 2021. 12. 30.

발 의 자: 민형배·조정훈·박상혁

황운하 · 김철민 · 박홍근

윤준병 • 주철현 • 임종성

장경태 · 정필모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, 법정대리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'단순승인'이나 '한정승인' 또는 '포기'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,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. 만약 상속채무가 실제 재산보다 초과한 사실을 법정대리인이 알지 못 해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, 상속인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 담해야 합니다.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 습니다.

이에,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 제

한능력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(안 제1020조 및 안 제1026조의2 신설).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0조의 제목 중 "승인·포기의 기간"을 "승인·포기에 관한 특례"으로 하고, 제10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 승인 또는 포기하려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26조의2(제한능력자의 예외) ① 제1026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상속재산 목록의제출 및 제1032조에 따른 공고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관하여는 제1033조부터 제10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27조 중 "前條第3號"를 "제1026조제3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제한능력자의 상속에 관한 적용례) 제1020조제2항 및 제1026조의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20조(제한능력자의 <u>승인·포기</u>	제1020조(제한능력자의 <u>승인·포기</u>
<u>의 기간</u>) (생 략)	<u>에 관한 특례</u>) <u>①</u>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
	우에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
	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려는
	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
	한다. 이 경우 그의 친권자 또
	는 후견인은 상속재산을 조사
	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
	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1026조의2(제한능력자의 예외)
	① 제1026조에도 불구하고 상
	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
	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제
	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단순
	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
	때에는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
	본다.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
	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
	청구에 의하여 그의 친권자 또
	는 후견인에게 상속재산 목록
	의 제출 및 제1032조에 따른

第1027條(法定單純承認의 例外) 相續人이 相續을 拋棄함으로 因하여 次順位 相續人이 相續 을 承認한 때에는 <u>前條第3號</u>의 事由는 相續의 承認으로 보지 아니한다.

	공고를 명할 수 있다.								
	2	제1	항에	따	<u>=</u>	한정	승인	에	
	<u>관ㅎ</u>	·여는	- 제	1033	조부	-티	제10	<u>40</u>	
	조끼	<mark></mark> 가지의] 규	정을	군성	용한	다 <u>.</u>		
第	102	7條(法定骂	単純カ	 脈	의 1	列外)	_	
				<u>ス</u>	<u>भी 102</u>	26조	.제3호	<u>-</u> –	